

# 아산사회복지재단

138-73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/ (02)3010-2586 / FAX : 3010-8010 / 담당 : 오수진 대리

문서번호 : 아산(복) 제2014 - 1104 호

시행일자 : 2014. 11. 10

수 신 : 서울대학교 총장

참 조 : 학생처장(장학담당)

제 목 : 2015학년도 아산다솜 · 아산나래장학생 선발의 건

1.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대학생인 아산다솜장학생과 다문화가정·조손가정 자녀인 아산나래장학생을 선발코자 합니다. 별첨을 참고하시어 학생이 인터넷 접수(아산재단 지원신청서비스)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) 장 학 금 : 등록금 전액

2) 지급기간 : 2015학년도 1·2학기(1년)를 지급기간으로 함.

다만 장학생의 자격 및 요건을 유지할 경우 졸업시 까지 지급함.

3) 지급방법 : 학기별로 구분하여 소속 대학으로 송금함.

4) 지원기간 : 2014년 12월 1일(월)~3일(수)까지

5) 지원방법 : 인터넷 접수 아산재단 지원신청서비스(welfare.asanfoundation.or.kr)

별 첨 : 2015학년도 아산다솜 · 아산나래 장학생 신청안내 1부. “끝”

※ 안내문은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

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

이 사 장 정 몽 준



# 2015학년도 아산다솜 · 아산나래장학생 신청안내

## 1. 자격요건

아산다솜장학생	아산나래장학생
<p>1)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대학생</p> <p>2) 아산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2015년도에 2,3,4학년인 학생</p> <p>3) 2014학년도 1학기 학업성적이 3.0/4.5 이상인 학생으로 2학기에도 성적을 유지 해야함.</p> <p>4) 신규학기에 타기관의 장학금 수혜 대상이거나 보호자의 직장에서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함.</p>	<p>1)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자녀</p> <p>2), 3), 4) 좌동</p>

## 2. 지원기간 및 방법

- 1) 지원기간 : 2014년 12월 1일(월)~3일(수)까지
- 2) 지원방법 : 아산재단 지원신청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함.  
※ 아산재단 지원신청서비스 : [welfare.asanfoundation.or.kr](http://welfare.asanfoundation.or.kr)  
- 메뉴얼은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

## 3. 구비서류

- 1) 지원신청서
- 2) 자기소개서
- 3) 교수추천서 :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학과 교수에게 추천서를 받은 후 학교 장학 담당자의 확인을 받음.
- 4) 직전학기 성적증명서
- 5)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
- 6) 재산 및 소득관련 증빙 서류
  - 재산세 관련 : 부모 모두의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(과세내역이 없을 경우도 '과세사실없음'으로 기재되어 발급됨)
  - 소득세 관련
    - 부모님이 직장을 다닐 경우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장에서 발급)
    - 부모님이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: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, 인터넷 발급)
    -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: 사실증명서(세무서 발급)
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자 증명서만 제출
- 7) 장애인 등록증(다솜장학생 경우)  
※ 지원기간내 서류 누락시 심사에서 제외됨.  
※ 3), 4), 5), 6), 7)번 관련서류는 스캔 후 파일 첨부하며 면접일(미정)에 원본 제출함.

#### **4. 장학생 의무사항**

- 1)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나눔문화 체험
- 2) 아산장학생 만남의 장(울산산업체 견학) 참여
- 3) 아산재단 행사(장학증서수여식, 심포지엄 등) 참여
- 4) 아산장학생 모임 ‘정담회’ 활동(농촌봉사활동, 체육대회 등) 참여

#### **5. 장학생 결격사유**

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신규학기 장학생에서 제외됨.

- 1) 2회 연속 성적이 미달된 학생(기준 : 3.0/4.5 이상)
- 2) 제적, 정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
- 3) 휴학, 군입대, 질병, 기타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
- 4) 기타 재단 장학사업의 취지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

#### **6. 장학금 지급**

- 1) 장 학 금 : 등록금 전액
- 2) 지급기간 : 졸업시 까지 (학기별 심사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, 최대 정규학기까지 지급)
- 3) 지급방법 : 소속 대학으로 송금(학기별 분할지급)